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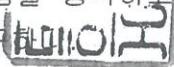
발기인총회의사록

2024. 1. 24. 9:00 주식회사 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.

발기인 총 수 1 명	이의 인수주식총수 60,000 주
출석발기인수 1 명	이의 인수주식수 60,000 주



발기인 대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박종철은 발기인 전원이 상법 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



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

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물은 즉, 전원일치로 안대로 승인하다.

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이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.

사내이사 이 기 환 (1979.02.27.)
기타비상무이사 최 태 호 (1968.03.24.)
기타비상무이사 고 광 현 (1965.09.05.)

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제3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대표이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.

대표이사 이 기 환 (1979.02.27.)

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

의장은 감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.

(단,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)



감 사 김 영 수 (1984.03.12.)

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제5호 의안 이사보수 결정의 건



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이사의 보수를 회사형편상 무보수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.

제6호 의안 감사보수 결정의 건



의장은 정관 제39조 규정에 의거 감사의 보수를 최초 사업년도에는 월30만원으로 책정함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.

제7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

의장은 발기인이었던 자를 제외한 이사 이기환, 최태호, 고광현, 감사 김영수로 하여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.

발기인이 아닌 이사, 감사는 별지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서와 같이 조사 사항을 소상히 설명 보고한 바, 전원 일치로 이를 승인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
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.

2024. 1. 24.

주식회사 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발기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(110111-1492513)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
(삼성동, 아셈타워)
대표이사 박 종 철



조사보고서

본인은 2024년 | 월 24일 본 회사 주식회사 삼정대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발기인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바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.

조사사항 및 조사결과

-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보통주식 60,000주로 2024년 | 월 24일 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
- 각주에 대하여 2024년 | 월 24일까지 그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었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이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.
-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,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,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,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.
-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.

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.

2024년 | 월 24일

사내이사 이 기 환



기타비상무이사 최 태 호



기타비상무이사 고 광 현



감사 김 영 수

